



천안시, 코로나19 극복 위한 다양한 혜택 ‘풍성’



천안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천안사랑카드의 캐시백 충전 한도를 향상하고 혜택 지급 기간 연장, 주정차 단속 완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유예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천안사랑카드는 연말까지 61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천안사랑카드는 출시한 달 만에 4만8천448건이 발급됐고, 판매액은 191억원을 돌파했다. 캐시백

10% 제공 기간도 7월 말까지 연장했다.

천안사랑카드는 전용 앱에서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현금(5만원 이상)을 지참해 천안지역 내 30개소 판매대행점(농협은행, 단위농협·별도지정)을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한시적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천안시는 시민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무료 개방된 공영주차장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10개소(주차면 수 646면)로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하될 때까지 시행된다.

또 한시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경기침체로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은 평일 및 휴일, 시 전역에 대해서는 휴일(토·일, 공휴일) 단속을 24시간 유예한다.

공유재산 임대료·교통유발 부담금·도로점용료 감면

천안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을 한시적으로 1%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천안역 지하상가, 청년몰, SB프라자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코로나19가 발병한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의 임대료를 80% 감면받게 된다.

이 밖에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작년 하반기(7~12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별, 지역별로 차등 부과된다. 올해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초 고지됐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과 착한 임대인 운동

천안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찾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직·간접 손해를 입은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 운송사업(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등의 업체다.

박상돈 시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다양한 할인·감면을 제공해 소비자는 혜택을 받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무너진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